제32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남양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

복지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2026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현재 시설별 관리주체가 상이한 우리 시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함.

(변경내용 : 위탁시설 4개소 → 11개소, 파크골프장 7개소 추가)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국궁장(천마장) 및 테니스장(다산·별내·퇴계원) 운영ㆍ관리

○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변경_추가)

■ 위탁시설 개요

○ (기존) 국궁장 1개소, 테니스장 3개소

시설명	주요시설	비고
국궁장(천마정)	4개 사로, 28개 사대	운영 중
별내배수지 테니스장	코트 2면	운영 중
용암천 테니스장	코트 2면	운영 예정('27.3.)
다산진건 테니스장	코트 2면	운영 예정('27.3)

○ (변경_추가) 파크골프장 7개소

연번	구분	조성 시기	관리주체		위탁 일정	비고
			기존	변경		
1	별내동 파크골프(9홀)	‘14.4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체육회	‘27.1.	운영중
2	조안면 파크골프(9홀)	‘22.7				
3	수동면 파크골프(9홀)	‘25.11				
4	왕숙천 다목적광장(18홀)	‘21.12	도시공사			
5	화도읍 파크골프(18홀)	‘26.5	체육회		‘26.11.	
6	남양주 다목적광장(18홀)	‘27.5	-		‘27.5.	조성중
7	진접읍 파크골프(9홀)	‘27.7			‘27.7.	

■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2028. 12. 31. 까지

※ 기존 시설 위탁 종료 기간 동일(2026. 1. 1.~ 2028. 12. 31. / 3년)

■수탁기관 선정방식

○ 현재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4개소(국궁장 1개소, 테니스장 3개소) 위탁 운영·관리 중인 남양주시체육회에 파크골프장 7개소 추가 위탁 (민간위탁 내용 변경)

○ 수탁기관: 남양주시체육회



○ 추진 근거

가.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체육회 민간위탁 수의계약 근거 확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11조)

나. 공익성,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지역사회 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 풀을 보유한 남양주시 체육회와의 수의계약을 추진

○ 위탁운영 방식

- 위탁 시설(사무) 지도 · 감독: 市
- 시설 운영 · 관리: **체육회(수탁기관)**
- 프로그램 운영 등(강습, 안전관리 등): **종목단체(테니스,궁도협회,파크골프협회)**

시설 운영·관리 역할은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종목별 전문성과 현장 운영 역량을 갖춘 종목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참여를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4.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 운영중인 기존 국궁장1개소, 테니스장 3개소에 파크골프장 7개소를 추가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파크골프장 7개소를 남양주시체육회에 추가 위탁시 파크골프협회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점과, 협회 자원을 통해 시설 운영시 운영 효과가 크다는 점 등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위탁 추친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시설이 11개소로 확대되는 만큼 향후 시설별 운영실태와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2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